

축산자조금 제도 및 사업내용



강형수
농림부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

I. 축산자조금 제도

1. 자조금의 성격과 원칙

■ 자조금의 성격

- 자조금은 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해 구성원의 결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원에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자금을 말함

* 자조금은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급여중 일부를 자동공제(Check-off)하여 조합의 활동비용으로 사용한다 해서 유래됨

■ 자조금 조성의 기본원칙

- ① 자조금 조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야 함
 - 특히 의무자조금은 구성원의 재산에 대한 제한이 수반됨
- * 미국의 경우 농가의 직접 투표에 의해 자조금 조성 여부 결정
- ② 자조금은 자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
 - 다만, 자조금의 효과가 무차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배제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조금 제도의 법제화(의무화)

* 현재 미국, 네덜란드, 영국, 캐나다,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분야에서 의무자조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

- ③ 대표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자조금이 관리되어야 함
 -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단의 공동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
- ④ 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물량이 거래되는 장소에서 자조금을 부과력·징수하여야 함
- ⑤ 구성원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 자조금은 필요최소액을 부과

2. 우리나라 축산자조금 추진경위

■ 「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」에 의거 임의자조금 사업추진('92~'00.5)

- '92년부터 양돈·양계·낙농 생산자단체에서 자조금을 조성하여 축산물의 소비홍보 사업 추진
- 정부에서는 축산농가 거출금의 100%이내에서 지원

■ 「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」에 의거 임의자조금 사업 추진('00.6~'02)

- 「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」 제정, 의무자조금제 도입('03~)
 - 임의자조금 운영시 무임승차문제, 거출금 조성 부진 등으로 사업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양돈협회 등 4개 생산자단체에서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입법 청원, 법 제정('02.5월)

주요내용

- 하나의 축산물에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
 - 대상축종은 한우, 젓소, 돼지, 육계, 산란계, 말, 양, 오리, 사슴, 토끼, 칠면조, 꿀벌, 거위, 메추리, 꿩 등 14종
- 축산단체에서 농가로부터 일정액을 거출받아 축산 자조활동자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, 정부는 조성(집행)액의 100% 범위내에서 보조지원
 -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시 농가는 의무적으로 위탁 수납기관(도축장, 집유장, 축산물 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 등)에 거출금 납부
 - 거출금의 한도 :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
- 자조활동자금의 용도는 축산물의 소비홍보, 축산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,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등임

3. 축산자조금 사업 추진상황

- 양돈·양계는 '92년, 낙농은 '99년, 사슴은 '04년부터 임의자조금 추진
 - 오리협회에서 임의 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중
- 양돈('04.4월, 400원/두), 한우('05.5월, 2만원/두), 낙농('06.5월, 2원/ℓ)은 의무자조금 도입

- '05년도 자조금 조성실적 : 양돈(95억 원), 한우(45억 원)
- '06년도 육계도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준비중

II. 축산자조금 사업내용

1. 사업개요

- 지원대상
 -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,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
-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
 -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,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,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
 - 축산물(우유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쇠고기, 오리고기, 녹용 등)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거출금 조성(집행)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
- 자조활동자금의 재원
 -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
 -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
 -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
 -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

■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용도

- 축산물 소비홍보
-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
-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그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2. 축산자조금 사업내용(예시)

가. 소비촉진 홍보사업

- 소비홍보에는 특히, 비선호 부위(수출부위) 소비 활성화 및 축산업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TV, 라디오, 신문, 잡지 등 광고와 홍보 팸플릿 제작 배부 등 포함

- 요리개발 및 홍보에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요리 개발과 비선호 부위에 대한 요리 개발 등 소비 촉진을 위해

- 소비홍보 이벤트 행사와 병행한 비선호 부위 요리경연대회 개최, 여성단체·음식협회·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한 요리 시식회 및 요리 강습회 개최,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선호 부위 소비촉진 시식사업 실시와 TV 광고 및 방송사 취재유도, 음식점과 주부들에게 요리책자·팸플릿 제작 배부 등 포함

나. 축산업자·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

-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업 등록제 및 친환경축산 교육 등을 통한 환경 및 위생 개선

- 축산관련 전문 신문, 잡지 등에 계도 광고, 홍보물 제작 배부, 시·도별 축산농가 교육, 단체별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, 항생제 잔류의 문제점 등 농가교육

- 생산자 교육에는 자조활동자금의 조기정착 및 시행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별 자조금 설명회, 의무자조금의 경우 도축장 대상 사업 설명회, 자조금 거출 홍보물 제작·배부 등 축산농가에 대한 자조활동 사업효과에 대한 교육 실시

- 정보 제공에는 선진 사양관리 기술 보급 및 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월간지 발행, 양축농가 계도 홍보물 제작·배부, 질병, 사양기술, 현안문제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등 내용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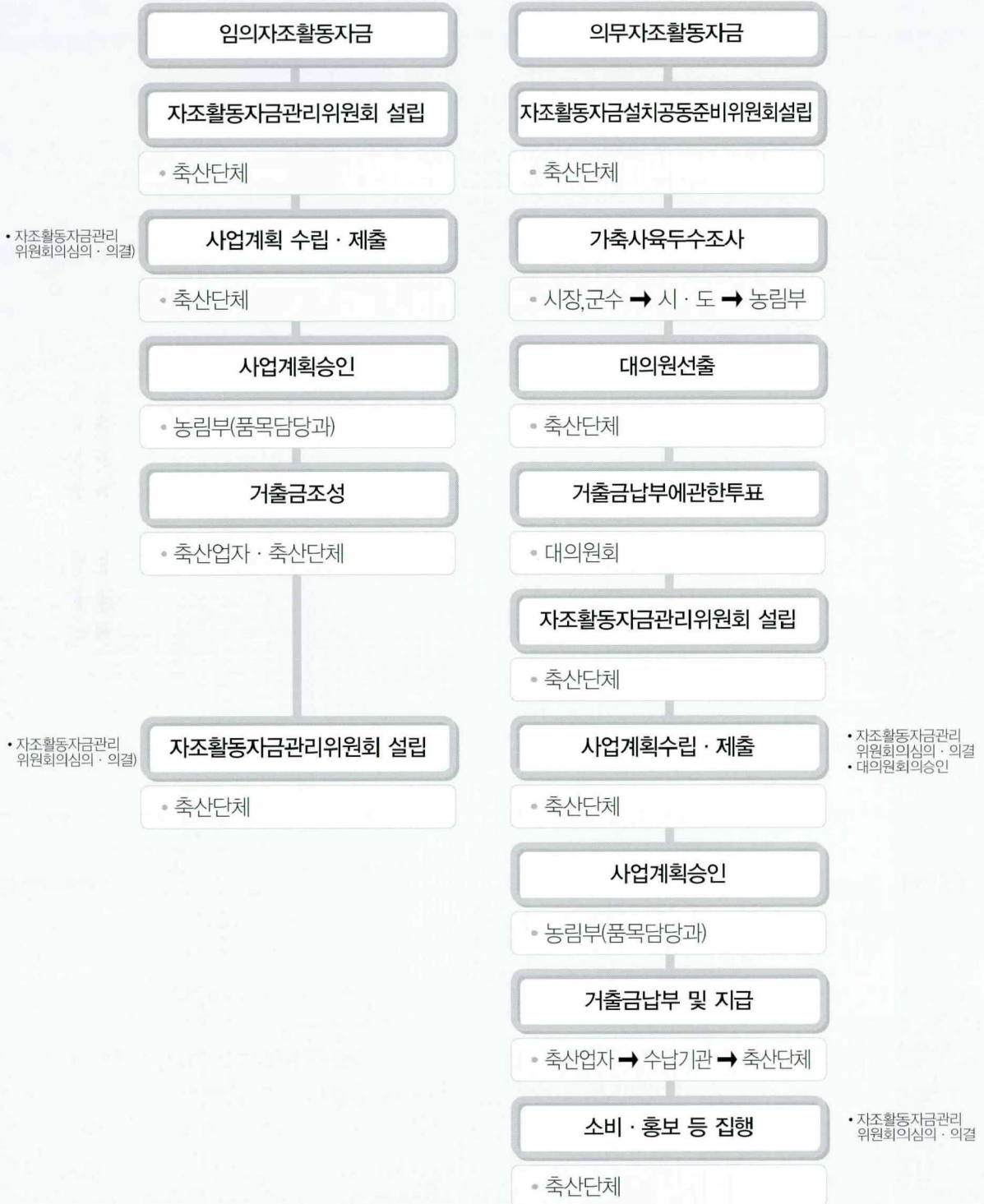
다. 조사·연구사업

- 소비홍보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국내 소비 현황 및 시장분석 등 소비실태 조사, 축산물의 식품영양학적·의학적·한의학적 효능 연구

- 선진국의 축산업 실태와 경쟁력 비교 조사
 - 선진국의 축산물 생산정보, 기술수준, 수출진흥 전략,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등에 관한 조사·분석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

- 수출전략 개발 및 해외시장 조사연구
 - 축산물 소비실태를 파악하고, 비선호 부위 소비 및 수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화에 기여
 - 해외시장 동향파악 및 축산 선진국의 자조금 사업 운영실태 조사

〈참고자료〉 사업추진절차



• 자조활동자금관리
위원회의심의·의결

• 자조활동자금관리
위원회의심의·의결

• 자조활동자금관리
위원회의심의·의결
• 대의원회의승인

• 자조활동자금관리
위원회의심의·의결